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술용역 지역제한 금액을 상향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설공사 관급자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술 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안 제24조제2호 개정)

- 1) 일반적인 용역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행안부 고시금액(3.3억)을 적용하나, 건설기술용역 등 기술용역은 기재부 고시금액(2.1억)을 적용
- 2) 건설기술용역 등 기술용역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에서 행안부 고시금액(3.3억원)으로 상향
- 3) 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나.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 제한 강화(안 제86조제1호 개정)

- 1)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공사의 계약이행 형태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활용

- 2)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을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며 요건 판단기준으로 “공사규모 등”을 추가
- 3) 시설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을 제26조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제24조 제2호 제가목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용역은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며, 제나목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용역 외의 용역”으로 한다.

제42조 제10호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을 삭제한다.

제48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2항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55조 제1항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를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로 한다.

제8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1호에서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_공사현장 및 공사규모 등”으로 하고 제2호에서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로 한다.

제87조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 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 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 서에 따른다.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 격의 결정) ----- ----- ----- ----- -----		
1. 감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 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 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1. 감정가격: 「 <u>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u> 」----- ----- ----- <u>제8조</u> ----- ----- -----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 산 등) ①, ② 생략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 산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 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③ ----- -----「 <u>부가가치세법</u> 」 제26 <u>조제1항</u> ----- ----- ----- ----- ----- ----- -----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①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③ (생략)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생략)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구는 5억원),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용역은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용역 외의 용역-----

제42조(입찰무효)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0.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 ~ 9. (현행과 같음) 10.. <삭제>
11.~13. (생략)	11.~13. (현행과 같음)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추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

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
금 납부) ① (생략)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보증보험증권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부)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_____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
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 회
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

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제출받은 자는 주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 등과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공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및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 ----- 전자등록증명서 -----

②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공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발주 시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공사현장 및 공사규모 등----- 고려하여-----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

[illegi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3